
로컬 관광상품 개발 <홍마실> 브랜드 투어 개발 및 홍보·확산 용역 과 업 지 시 서

2026년 7월

목 차

I . 과업개요

- 1. 과업개요 1
- 2. 과업목적 1

II . 과업내용

- 1. 과업방향 2
- 2. 과업지침 3

III . 세부 과업내용

- 1. 과업수행 흐름도 4
- 2. 과업내용 5
- 3. 과업 세부내용 5

IV . 과업 수행자격

- 1. 일반사항 8

V . 과업 세부지침

- 1. 일반사항 9
- 2. 사업 사전보고 및 승인 10
- 3. 사업의 시행 10
- 4. 성과품 제출 11
- 5. 지도 · 감독 12
- 6. 손해배상 등 12
- 7.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13
- 8. 회계처리 13
- 9. 기타사항 14

로컬 관광상품 개발 <홍마실> 브랜드 투어 개발 및 홍보·확산 용역 과업지시서

I 과업개요

1. 과업개요

- (과업명) 로컬 관광상품 개발 <홍마실> 브랜드 투어 개발 및 홍보·확산 용역
- (기간) 계약일로부터 ~ 2026. 12. 24.(목) 까지
- (장소) 광천 로컬콘텐츠타운(광천읍) 및 홍성군 일원
- (사업비) 금239,000,000원(금이억삼천구백만원)/부가가치세 포함
- (주최·주관) (재)홍주문화관광재단 홍성군 문화도시센터
- (과업내용)
 - 광천 로컬콘텐츠타운 기반 특화 브랜드 투어 개발 및 시범운영
 - 광천 권역과 홍성군 내 타 권역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
 - 광천 권역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재단 홈페이지 연계 관광상품 예약시스템 구축 및 유료 판매체계 마련
 - 홍성 관광 DB 구축 및 지자체·유관기관 연계 활용체계 마련
 - 브랜드 투어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성과관리

2. 과업목적

-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로컬콘텐츠를 활용한 차별화된 브랜드 투어 개발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
-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의 상시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관광상품의 자생적 수익구조 확립

- 신규 브랜드 투어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체류시간 확대, 지역 관광소비 활성화 도모

II

과업내용

1. 과업방향

□ 신규 로컬 콘텐츠 발굴 및 브랜드 투어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기반 마련

- 최신 관광 트렌드와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브랜드 투어를 개발하여 지역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
 - 본 용역은 아래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투어를 제안하여야 함

2026년 관광 트렌드 (D.U.A.L.I.S.M.)	
키워드	내 용
D	AI 활용 예약 및 정보 탐색으로 여행자는 온전히 여행만을 즐김
U	현실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함
A	환경보전 및 지역 상생에 기여하는 재생형 관광을 추구함
L	가치에 따른 소비 비중을 나눔(가성비 추구 등)
S	복합 문화 공간 활용 문화콘텐츠 융합을 통한 방문객 참여형 관광
M	여행 소비의 의미와 방식에 따른 세대별 감성 세분화

* 2026년 관광 트렌드 (한국관광공사, 202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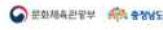
- 광천 로컬콘텐츠타운을 중심으로 상시 운영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, 체류시간 확대 및 지역 관광소비 활성화 도모
- 대표상품, 권역 연계 체류형, 지역축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브랜드 투어 운영체계 구축

□ 데이터 기반 관광 마케팅 및 관광상품 운영체계 구축

- 신규 개발한 브랜드 투어 및 관광상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하여
홍성 관광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광정보 활용 기반 마련
- 재단 홈페이지와 민간 예약플랫폼을 연계한 관광상품 예약시스템을
구축하여 관광상품의 온라인 판매 및 운영 기반 마련
- 홍보 콘텐츠 제작과 지자체·유관기관 관광정보 연계를 통해 브랜드
투어의 홍보 확산 및 관광객 접근성 강화

2. 과업지침

- 기존 관광상품 및 거점 장소 등 지역 자원의 결합 및 활용을 통한 신규
투어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함
- 신규 투어 콘텐츠의 시장 경쟁력 검증을 위해 1회 이상의 시범 운영을
실시하여야 함
- 홍성군 관광 DB 등록 및 활용을 위해 신규 투어 콘텐츠 정보를 목록화
하고, 이를 재단 혹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2차 가공을 통해 홍성 관광
정보 공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
- 재단 홈페이지 투어 프로그램 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유료 상품화 기반을
마련하고, 로컬 관광 사업의 자생적 운영 구조를 확립하여야 함
- 홍보물(웹포스터, 카드뉴스, 웹배너 등) 제작 시 문화도시 홍성 홍보물 제작
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, 제작 및 배포의 전 과정을 재단(홍성군
문화도시센터)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

포스터 (A4 비율)	카드뉴스 (인스타그램)	웹배너 (재단 홈페이지)
 사업명 일시 장소 사업내용 등 문의처 	 내용 	 제목 및 사업 개요

***본 가이드라인(안)은 상황에 따라 조정 및 변형될 수 있음**

-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보완, 그 밖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시 재단(홍성군 문화도시센터)와 논의 후 추진하여야 함
- 관련 법규 및 발주 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

III 세부 과업내용

1. 과업 세부내용

① 과업수행 흐름도

①신규 브랜드 투어 개발 및 운영	②관광상품 판매 및 관광 DB 연계 구조 구축	③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
2026. 8. ~ 12.	2026. 8. ~ 12.	2026. 12.
· 신규 투어 콘텐츠 개발 및 투어 프로그램 운영 - 지역 특색을 지닌 신규 투어 콘텐츠 개발 - 시장 경쟁력 검증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 시범 운영 - 전국민 대상 투어 프로그램 지속 운영	· 관광상품 온라인 판매 구조 구축 - 재단 홈페이지와 투어 프로그램 예약 플랫폼 연계 시스템 구축 · 홍성 관광 DB 연계 등록 - 지자체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관광 DB 데이터 목록화 및 온라인 등록	·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- 로컬 관광상품 개발 브랜드 투어 개발 및 홍보 확산 용역 결과보고 작성 및 재단 제출

② 과업내용

구 분		과업내용	사업량	
신규 브랜드 투어 개발 및 시범운영	대표상품 구축	· 광천 권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- 광천 권역 당일형(무박) 관광코스 개발 - 시범운영 : 12회 이상	1종	총 20회 이상 운영 / 500명 이상 참여
	체류관광 확대	· 권역 연계 체류 관광상품 개발 - 광천 권역과 홍성군 내 타 권역 연계 체류형(1박 2일 이상) 관광코스 개발 - 연계 권역은 제안사가 제안 - 시범운영 : 8회 이상	1종	
	관광수요 확장	· 지역축제 연계 관광 프로그램 기획·운영 - 홍성군 광천 권역 축제와 연계 - 축제기간 운영	1종	총 3회 이상 운영 / 100명 이상 참여
관광상품 온라인 판매구조 구축	운영기반 구축	· 재단 홈페이지 연계 예약 시스템 구축 - 민간 예약플랫폼 연계 - 유료 관광상품 판매 기반 마련	1식	
홍성관광 DB 연계 등록	관광정보 확산	· 홍성 관광 DB 목록화 및 등록 · 지자체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연계	1식	
결과보고 및 사업정산	홍보· 성과관리	· 홍보콘텐츠 제작(영상, 슷폼, 사진 등) - 대표 홍보영상 : 1편 - 슷폼 콘텐츠 : 8편 이상 - 홍보사진 촬영 : 1식 ·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· 결과보고 및 사업정산	1식	

③ 과업 세부내용

① 신규 브랜드 투어 개발 및 운영

○ 시 기 : 2026. 8. ~ 12.

○ 과업내용

- (상품개발) 광천 로컬콘텐츠타운(거점 공간) 기반 관광상품 및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브랜드 투어 개발

[상품 개발]

- (상시 운영 체계 구축) 상시 운영이 가능한 3개 전략 유형(대표상품 구축, 체류관광 확대, 관광수요 확장)의 브랜드 투어 개발·운영
- (창의적 테마 설정) 지역 고유가치와 연계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브랜드 투어 테마 설정

[상품 유형]

구 분	내 용	과 업 량	
대표상품 구축	광천 권역 특화 당일형(무박) 관광상품 개발	12회 이상 운영	총 20회 이상 운영,
체류관광 확대	광천 및 홍성군 소재지 타 권역 연계 체류형 (1박 2일 이상) 관광상품 개발	8회 이상 운영	500명 이상 참여
관광수요 확장	광천 문화시장&전통시장 중심 지역축제 연계 관광 프로그램 운영 * 광천토굴새우젓&김축제 10.16.(금)~10.18.(일) 전통시장 * 홍성백반페스타 10.17.(토)~10.18.(일) 문화시장	3일 동안 3회 이상 운영 100명 이상 참여	

[상품 구성 방안]

- 최신 관광 트렌드와 지역 고유가치를 반영한 스토리텔링형 관광콘텐츠 구성
- 로컬콘텐츠타운(거점공간)을 기반으로 기존 로컬콘텐츠 및 문화도시 사업을 관광상품으로 접목
- 그 외 문화도시 홍성의 비전 및 브랜드 이미지, 지역 고유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 활용
- 기존 콘텐츠 활용 및 접목의 개수나 분야의 제한은 없음
- 지역 내 일반 관광지 및 상시 프로그램을 포함한 신규 관광 콘텐츠 창출 가능

[필수사항]

- 단, 모든 브랜드 투어는 광천읍을 핵심 거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체류관광 확대 유형의 경우 홍성군 내 다른 권역 연계 가능, 개수 제한은 없음.

- (투어운영) 신규 투어 프로그램 시범 운영 관련 전반적 계획 수립 및 실행

[운영계획]

- (운영대상) 참가자 연령, 성별, 등 고려한 시범 운영 대상층 설정 등의 계획
 - 시범운영 : 홍보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1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, 유관기관 관계자, 일반 관광객 등

인플루언서 섭외 기준

- 팔로워 10만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향력을 보유한 관광 분야 SNS 채널 운영자 (유튜브, 인스타그램 등)
- 투어 프로그램 홍보 콘텐츠(사진 및 영상) 제작이 가능한 자
- 홍보 콘텐츠 온라인 업로드 후 과업 종료 기간까지 인사이트 제공이 가능한 자 (조회수, 검색기록 등)
- 지속운영 : 전국민 및 외국인

◦ (운영내용)

- 투어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지속 운영
- 신규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중심 운영 내용 구성 (인력구성, 시범 운영방식, 이동수단, 집합장소, 운영내용 등)

◦ (상품가격 책정) 상품원가 및 인원수, 추후 자생적 운영을 통한 유료 상품화 고려

* 참가비 할인을 적용할 경우, 원가와 할인율을 함께 기재

* 참가비는 차회 투어 운영 시 운영비로 재투자하며, 관련 내용 필수 기재

* 향후 상시 운영 및 민간 예약플랫폼 판매가 가능하도록 적정 가격 제시

◦ (관리방안) 안전 및 우천 시 대책 및 사후 관리 방안 수립

[투어운영]

- (프로그램 운영) 집합 - 프로그램 운영 - 해산의 모든 과정의 안내 및 관리 · 운영
- (사후설문) 참가자 소감 및 만족도, 보완 및 개선점 취합을 위한 사후설문 진행

[사후관리]

- (만족도조사)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 및 차년도 운영방안 제시

② 관광상품 판매 시스템 및 관광 DB 연계 구조 구축

○ 시 기 : 2026. 8. ~ 12.

○ 과업내용 : 투어 예약 플랫폼 연계 시스템 구축 및 흥성 관광 DB 등록

[관광상품 판매 시스템 구축]

- 신규 투어 콘텐츠 및 투어 프로그램 예약 플랫폼 등록
- 재단 홈페이지 연계 투어 프로그램 신청 시스템 등록
 - <투어 신청> 카테고리 및 캘린더, 리스트 형식의 투어 신청 페이지 신설
 - 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설명, 문의처 등 안내 가능한 상세 페이지 포함

[관광 DB 연계 등록]

- 관광 DB 데이터 목록화(거점공간, 상시운영 프로그램, 추천 투어 코스, 문의처 등)
- 지자체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연계 업로드를 고려한 자료 취합

③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

○ 시 기 : 2026. 12.

○ 과업내용 : 로컬 관광상품 개발 브랜드 투어 개발 및 홍보 확산 용역
성과자료 및 결과보고 작성 및 재단 제출

[홍보 콘텐츠 제작 결과 보고]

- 대표 홍보영상(로폼) 1편 이상, 숏폼 투어 유형별 1편 이상(총 8편 이상) 제작
- 투어 프로그램 대표 홍보 사진 : 콘텐츠 및 프로그램 당 1건 이상 촬영
- 홍보 콘텐츠 업로드 인사이트 (업로드 일부터 과업 종료 시까지 조회수, 검색 유입기록 등)

[브랜드 투어 신규 개발 및 홍보 확산 용역 결과 보고]

- 투어 개발 및 운영 결과보고(코스, 프로그램,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관련 전반적 내용)
- 사후 설문조사 결과 내용 및 통계 자료 포함

IV 과업 수행자격

1. 일반사항

- 공고일 전일 기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, 동법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)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
-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, 국내외 여행업, 국내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
-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(G2B)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 [업종 코드 1261], 국내외여행업 [업종코드 1262], 국내여행업 [업종코드 1263]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

-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, 폐업, 부정당업체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, 자격 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
- 공동수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(재용역)은 허용하지 아니함
- 입찰 참가 신청 시 재단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

V 과업 세부지침

1. 일반사항

- 1) 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비는 발주부서에 추가 요구할 수 없고, 계약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2) 내역서에 있는 비용을 초과하여 집행 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.
- 3)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과업지시서,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.
- 4)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5)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제작한 일체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 일체는 재단법인 홍주문화관광재단에 있으며, 용업업체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, 본 과업수행 성과품(온라인 콘텐츠 포함)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재단법인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소유한다.
- 6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정책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- 7)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및 기관의 정보와 모든 성과품은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,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,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.
- 8)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,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직원교체 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과 관련된 보안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9) 보안조치의 불성실로 인하여 자료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
2. 사업 사전보고 및 승인

- 1)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까지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, 협상내용과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.

3. 사업의 시행

- 1)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, 관계법규 및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4. 성과품 제출

구 분	규 격		수 량	비 고	
홍보 콘텐츠	USB	사진 원본 및 보정본	각 1식	사진 - 원본 및 보정본 영상 - SNS 채널에 업로드 된 영상 *세부과업 내용 - 과업량 참조	
		영상 최종본			
	인사이트 리포트			조회수, 검색 유입 경로, 공유 수 등 사업 종료 시까지 변화 추이 결과 보고	
홍성 관광 DB	목록화 자료		1식	기본 정보	장소명, 위치, 운영시간, 문의처 등
				상품성 정보	운영 내용, 수용 인원, 체험비 단가, 추천코스 등
결과보고서	A4, USB		15부, 1개	과업 수행 시 발생한 모든 자료 포함 (행사 기록 자료, 용역 사진 등 투어 기획, 운영 관련 전반적인 내용)	
				사후 설문조사 결과 및 통계 (향후 개선 및 운영 방안 등)	

- 1) 계약상대자는 전체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.
- 2) 홍보 콘텐츠 결과물에는 제작 결과물(사진 및 영상의 원본, 보정본, 업로드본)과 홍보 콘텐츠 운영 인사이트 리포트(홍보의 효과성을 드러내는 추이 변화 등의 결과보고)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3) 홍성 관광 DB 자료는 홍성 관광 활성화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. 재단 및 홍성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과업으로 개발된 콘텐츠 및 기존 홍성 관광 데이터의 최신 정보를 체계적으로 목록화 하여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 형태로 구축 및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결과보고서에는 결과자료[사진자료(홍주문화관광재단 홍보매체 업로드용),]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사업 결과보고서: 각종 프로그램 진행 내용, 장면(사진), 사후 설문 조사 문항 및 결과 통계자료, 향후 운영 시 개선 방안 포함

5. 지도·감독

- 1)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한다.
 - 수시보고 : 발주부서에서 요구할 경우
 - 착수보고 :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(서면)
 - 사업착수 보고서
 - 행사참여 명단 및 책임자 선임계
 - 용역 수행 예정표
 - 투입 장비 리스트
 -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
 - 기타 재단에서 정한 사항
 - 사업결과보고 : 사업 종료 14일 이내
 - 제출 공문(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)
 - 결과보고서(일자별 운영일지, 내용 및 사진 등 포함)
- 3)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6. 손해배상 등

- 1)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7.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

- 1)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※ 재난상황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계약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
- 2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“발주기관”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“계약 상대방”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3)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, “발주기관”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.
- 4) “발주기관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“계약 상대방”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.
 -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 - “발주기관”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
 -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
- 5) “발주기관”은 “계약 상대방”가 정당한 사유 없이 “계약 상대방”가 제출한 제안서와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 상대방”가 상호협상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용역 대금을 지급한다.

8. 회계처리

- 1)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 금액으로 정산하여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발주처의 지급의무가 없으며, 지급하지 않는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, 인건비는 타 비용보다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상대자는 회계책임자를 지정(보고)하고 운영하여야 하며, 해당 용역에 대한 선금 신청은 최초에는 계약금액의 30%까지 신청 가능하며, 추가 신청은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계약금액의 70%까지 지급 가능하다.
- 4) 회계 정산은 세금계산서 및 결과보고서로 같음한다.

9. 기타사항

- 1)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- 2)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.
- 3)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